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9
----------	----

2014년 12월 18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 보류)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대상(안 제4조)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심의 제외사항 ○ 긴급 재해복구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input type="checkbox"/> 심의 제외사항 ○ 좌동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자문대상 1.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다음 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낙찰자 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문대상 1.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다음 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체결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심의대상 1.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 본청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 ○ 본청 이외의 기관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 2. 계약체결 방법 3. 낙찰자 결정방법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nput type="checkbox"/> 심의대상 1.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은 2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 계약체결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 간사를 경리담당사무관에서 계약관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 교육지원청 경우 대상 기관인 초·중학교에 유치원 추가함(안 제8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 심의사항의 경우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치이며, 동 조항 단서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개정된 단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간사 변경(안 제7조)

- 간사를 “경리담당사무관”에서 “계약관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은 직제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하겠음.

다) 심의요청 단서에 유치원 추가(안 제8조)

-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경우에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소속 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심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사 등 계약 발주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며 심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됨.

라) 기타 개정사항(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12조)

-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회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의결“을 굳이 “결정“으로 개정할 의도가 불분명하다 하겠음.
- 안 제12조의 경우, 조문의 체계 상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조문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소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문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미 2009년 및 제2013년에 개정된 지방계약법과 2010년에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으로,
- 동 조례가 200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그동안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의 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적기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시·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시·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u>적법성에 대하여</u>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u>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u>은 제외한다.</p> <p>1.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가. <u>본청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u></p> <p>나. <u>본청이외의 기관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p> <p>3.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u></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u>적법성을</u>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u>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u>은 제외한다.</p> <p>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u>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u></p> <p>가. <u>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나.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p> <p>다.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p> <p>2. <u>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3. <u>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u></p> <p>4.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제4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3.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항</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p> <p>2. 기타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p> <p>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
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해당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각 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

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p>

현 행	개 정 안
<p><u>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u></p> <p>1.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가. <u>본청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u></p> <p>나. <u>본청이외의 기관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p> <p>3.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위원회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자문한다.</p> <p>1. <u>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u>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p> <p>2. <u>기타</u>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p>	<p><u>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u></p> <p>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u>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p> <p>나.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p> <p>다.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p> <p>2. <u>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3.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위원회는 다음 <u>각 호의</u> 사항을 자문한다.</p> <p>1. <u>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u>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u>계약체결 방법</u>,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p> <p>2. <u>그 밖에</u>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결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u>자문을 함에 있어 당해</u>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u>자문을 할 때 해당</u>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u>제107조의 규정</u>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u>제107조에 따라</u>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계약심의위원회</u>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u>자</u>를 선임한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위원회</u>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u>사람</u>을 지명한다.</p>
<p>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u> 이내로 구성한다. <u>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u></p>	<p>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u>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함에 있어</u>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u>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u>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⑥ ~ ⑦ (생략)</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u>위원회(소위원회 포함)</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u>경리담당사무관이</u> 된다.</p>	<p>제7조(간사) <u>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명</u>을 두되, 간사는 <u>계약관리담당사무관이</u>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심의요청 등) <u>본청을 비롯한 각 기관(각급학교 포함)의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u>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u>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u> 경유하여야 한다.</p>	<p>제8조(심의요청 등) <u>각 기관에서</u>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u>경우에는</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u>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u> 경유하여야 한다.</p>
<p>제9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u>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10일의 <u>범위 내에서</u>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u>제8조에 따라</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u>제1항에 따라</u>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해당</u>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10일의 <u>범위에서</u>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u>제2항에 따른</u>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후관리) ① <u>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u>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u>계약관련 의사결정시</u> 이를 참</p>	<p>제11조(사후관리) ① <u>제9조제3항에 따라</u>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u>제9조제3항에 따라</u>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u>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u> 이를 참고한다.</p>

현 행	개 정 안
<p>고한다.</p> <p>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u>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u>당해</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u>6월</u> 이상의 <u>해외여행</u>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5. (생략)</p> <p>제13조(수당·여비 등) ① <u>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u>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u>해당</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u>6개월</u> 이상의 <u>국외여행</u>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5.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등) ① <u>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u>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p> <p>② <u>제10조에 따라</u>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에서</u>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u>필요한</u>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